

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0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7. .

발 의 자 : 임희도 의원

1. 수정이유

- 규칙으로 위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6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(안 제6조의2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, 인사업무 담당부서장,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명

2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
3. 하남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2명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
다.

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되며,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.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』

[별지 제1호서식]

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

1. 개최일시	
2. 출석위원	
3. 의 제	
4. 내 용(회의록)	
5. 기타, 주요사항	

위원장 :

(확인)

간사 :

(확인)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6조(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제6조의2(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u>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, 인사업무 담당부서장,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<u>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명</u></p> <p><u>2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</u></p>

의원 1명

3. 하남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
임직원 2명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
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
있다. 다만, 시의원인 위원의 임
기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
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
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
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
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
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
는 체육업무 담당이 되며, 간사
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
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
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
다.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
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
한다.